

제323회 임시회
2013.9.11.(수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3. 9. 11. (수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정 현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3년 8월 26일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8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9월 4일

(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 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도내에 투자하려는 국내·외 기업, 국내복귀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운용중인 조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,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조항 신설(안 제4조의2)
- [별표 2]의 대상을 '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시·도에 소재한 기업'으로 규정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나기성)

- '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국민권의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,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, [별표 2]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.
-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-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[별표 2]의 대상란 중 “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중 별표 1”을 “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도권내 대상지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~ 제3조(투자유치위원회 설치) (생략)	제1조(목적) ~ 제3조(투자유치위원회 설치) (현행과 같음)
제4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~ ③ (생략)	제4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(신 설)	<p>제4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</p> <p>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.</p> <p>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</p> <p>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</p>

관 계 법 령

□ 행정심판법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(鑑定)을 한 경우

4.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
5.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(疏明)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,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(正本)을 송달하여야 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

⑦ 사건의 심리·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